외국환거래법 시행령

[시행 2026. 4. 28.] [대통령령 제36280호, 2026. 4. 28., 일부개정]
재정경제부 (외환제도과) 044-215-4753, 4756

제10조(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)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. <개정 2025. 12. 30.>

1. 대한민국 재외공관
2.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·기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
 가.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
 나.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
 다. 그 밖에 영업 양태,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(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·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
 가.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
 나.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

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.<개정 2017. 6. 27., 2025. 12. 30.>

1.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
2. 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」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(이하 이 호에서 "미합중국군대등"이라 한다),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·군속·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·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
3.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
4.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·기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
 가.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
 나.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
 다.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.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 라. 그 밖에 영업양태,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
 가.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·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
 나.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
 다.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

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.